

의안번호	2203146
의 퇴 인	윤준병 의원
회 답 일	2024. 9. 3.
추계번호	24F309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5년 6,894억원, 2029년 1조 7,318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5조 7,452억원(연평균 1조 1,49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하이브리드 자동차: 5년간 총 2조 2,132억원(연평균 4,426억원) 감소
 - 전기·수소 자동차: 5년간 총 2조 8,859억원(연평균 5,772억원) 감소
 - 여객자동차: 5년간 총 467억원(연평균 93억원) 감소
 - 천연가스 버스: 5년간 총 173억원(연평균 35억원) 감소
 - 전기·수소전기버스: 5년간 총 5,821억원(연평균 1,164억원) 감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, 2025~2026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66조 제3항)	-2,558	-3,268	-4,173	-5,329	-6,805	-22,132	-4,426
전기·수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66조 제4항)	-3,594	-4,451	-5,515	-6,833	-8,466	-28,859	-5,772
여객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70조제1항)	-111	-102	-93	-85	-77	-467	-93
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70조 제3항)	-48	-40	-34	-28	-24	-173	-35
전기·수소전기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70조 제4항)	-583	-788	-1,065	-1,439	-1,946	-5,821	-1,164
계	-6,894	-8,649	-10,880	-13,714	-17,318	-57,452	-11,490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6조 제3항 (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)	-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－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9년 12월 31일	
2	안 제66조 제4항 (전기·수소차에 대한 감면)	- 전기·수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－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9년 12월 31일	
3	안 제70조제1항 (여객자동차에 대한 감면)	-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－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9년 12월 31일	
4	안 제70조제3항 (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감면)	-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－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9년 12월 31일	
5	안 제70조제4항 (전기·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감면)	-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·수소전기 버스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－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→ (개정안) 2029년 12월 31일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66조 제3항 (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)	○	
2	안 제66조 제4항 (전기·수소차에 대한 감면)	○	
3	안 제70조제1항 (여객자동차에 대한 감면)	○	
4	안 제70조제3항 (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감면)	○	
5	안 제70조제4항 (전기·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, 세수 효과는 2025년부터 발생
- (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) 국토교통부의 「자동차등록통계」 연료유형별 자동차 신규등록 건수를 참고하여, 향후 하이브리드 및 전기·수소자동차 취득대수를 전망하고,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
 - 유형별로 신규 자동차 등록 추이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다음 가정에 따라 향후 자동차 취득대수를 전망
 - － (하이브리드 자동차) 2023년 신규등록 건수(39.2만대)를 기준으로, '21~'23년 연평균 증가율(27.7%)에 따라 향후 신규취득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
 - － (전기·수소 자동차) 2023년 신규등록 건수(16.7만대)를 기준으로, '21~'23년 연평균 증가율(23.9%)에 따라 향후 신규취득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

- 감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 요건¹⁾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기·수소 자동차는 전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,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75.8%(2023년 기준,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추정) 만 요건을 충족하며 향후에도 해당 비중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
- 일반적인 자동차 가격수준을 고려할 때,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감면액은 한도(하이브리드 40만원, 전기·수소 140만원)를 적용받을 것을 전제하여 세수효과를 추계
 -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액 한도(40만원)를 역산할 경우, 차량가액은 571만원 수준
 - 전기·수소자동차 감면액 한도(140만원)를 역산할 경우, 차량가액은 2,000만원 수준
- (안 제70조제1항) 최근 5년간 여객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건수의 감소에 따라 감면액 규모도 감소하는 추세이므로,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감면액의 연평균 감소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(2018~2022년)간 감면액 연평균 감소율: △8.7%
- (안 제70조제3항)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5년(2018~2022년)간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의 연평균 감소율을 적용하여 향후 5년간 세수 효과를 추계
 -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액 감소율: △15.9%
 -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감면율(85%) 적용 시의 2018년 감면액 산출한 후 2018~2020년 감면액은 감면율을 현 수준(75%)으로 조정한 실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8년 160억원에서 2022년 8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
- (안 제70조제4항) 2023년 실적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기·수소전기버스 취득세 감면액 증가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감면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면액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이나,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할 때 최근 4년간 감면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경향이 있어 이를 적용할 경우 향후 5년간 감면액 규모가 지나치게 크게 추계될 우려가 있음
 - 최근 4년(2020~2023년)간 감면액 연평균 증가율: 43.0%

1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

- 2023년의 경우에도 2022년 대비 감면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나, 점차 증가추세가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2022년 대비 2023년 증가율을 적용하여 향후 세수효과를 추계
 - 2022년 대비 2023년 감면액 증가율: 35.2%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·수소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(안 제66 조제3항 및 제4항)

(1)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□ (제도개요)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한도는 다음과 같이 변화해 옴

- 하이브리드 자동차: ('10년) 140만원 → ('20년) 90만원 → ('21년) 40만원
- 전기·수소 자동차: ('12년) 140만원 → ('17~'18년) 200만원 → ('19년) 140만원

□ (감면실적)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한도액 축소에 따라 2021년 725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, 2022년에는 913억원으로 증가
- 전기·수소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2018년 567억원에서 2022년 2,502억원으로 증가

[표 2]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실적: 2018~2022년

(단위: 억원)

	2018	2019	2020	2021	2022
하이브리드 자동차	1,500	1,639	1,326	725	913
전기·수소 자동차	567	522	710	1,512	2,502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□ (자동차 유형별 취득대수 및 감면대상 전망)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

연료유형별 자동차 신규등록 건수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의 신규 취득 대수 및 감면대상 수를 전망

-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23년 신규등록 건수를 기준으로, 향후 '21~'23년 연평균 증감률(27.7%)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신규로 취득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75.8% 만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

[표 3] 하이브리드 자동차 신규등록 건수: 2019-2023년

(단위: 건, %)

	2019	2020	2021	2022	2023	'21-'23년 연평균 증가율
등록건수	104,301	173,580	240,341	274,856	392,075	27.7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

[표 4] 하이브리드 자동차 신규취득 대수 전망: 2024-2026년

(단위: 대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하이브리드 자동차(A)	500,772	639,603	816,923	1,043,211	1,332,180	1,701,194
감면 대상 (A × 75.8%)	379,585	484,819	619,228	790,754	1,009,792	1,289,50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전기차·수소 자동차) 전기·수소 자동차는 2023년 신규등록 건수를 기준으로, 향후 '21~'23년 연평균 증감률(23.9%)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신규로 취득하는 전기·수소 자동차 100%가 감면대상이 된다고 가정

[표 5] 전기·수소 자동차 신규등록 건수: 2019-2023년

(단위: 건, %)

	2019	2020	2021	2022	2023	'21-'23년 연평균 증가율
전기자동차	35,102	46,776	100,549	164,748	162,639	27.2
수소자동차	4,201	5,848	8,549	10,338	4,710	-25.8
계	39,303	52,624	109,098	175,086	167,349	23.9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

[표 6] 전기차·수소 자동차 신규취득 대수 전망: 2024-2029년

(단위: 대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전기·수소 자동차(A)	207,265	256,702	317,931	393,917	488,063	604,710
감면 대상 (A × 100%)	207,265	256,702	317,931	393,917	488,063	604,71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세수효과) 앞서 전망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감면대상 전망치에 감면액 한도를 적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
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일반적인 가격을 고려 시, 모든 자동차 취득에 대해 한도액까지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
 -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액 한도(40만원)를 역산할 경우 차량가액은 571만원 수준
 - 전기·수소전기자동차 감면액 한도(140만원)를 역산할 경우 차량가액 2,000만원 수준

[표 7] 차량유형별 세수효과 추정

(단위: 대, 억원)

		2025	2026	2027	2028	2029
하이브리드 자동차 (제66조 제3항)	감면 대상(A)	639,603	816,923	790,754	1,009,792	1,289,505
	감면액 (A×40만원)	2,558	3,268	4,173	5,329	6,805
전기·수소전기차 (제66조 제4항)	감면 대상(B)	256,702	317,931	393,917	488,063	604,710
	감면액 (B×140만원)	3,594	4,451	5,515	6,833	8,46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결과

-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취득세는 2025년 6,152억원, 2029년 1조 5,271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5조 991억원(연평균 1조 19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하이브리드 자동차: 5년간 총 2조 2,132억원(연평균 4,426억원) 감소

- 전기·수소 자동차: 5년간 총 2조 8,859억원(연평균 5,772억원) 감소

[표 8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,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66조 제3항)	-2,558	-3,268	-4,173	-5,329	-6,805	-22,132	-4,426
전기·수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66조 제4항)	-3,594	-4,451	-5,515	-6,833	-8,466	-28,859	-5,772
계	-6,152	-7,719	-9,688	-12,162	-15,271	-50,991	-10,198

나. 여객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(안 제70조제1항)

(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(제도개요)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운송사업 또는 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% 감면

- 버스운송사업: 시내버스운송사업 · 농어촌버스운송사업 · 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
- 택시운송사업: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

- (감면실적) 감면건수는 2018년 44,265건에서 2022년 33,960건으로, 감면액은 2018년 210억원에서 2022년 146억원으로 최근 5년간(2018~2022년) 감면건수 및 감면액 모두 감소하는 추세임

[표 9] 여객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: 2018~2022년

(단위: 건, 억원)

	2018	2019	2020	2021	2022
감면건수	44,265	44,796	37,936	35,661	33,960
감면액	210	238	166	151	146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방법

- 최근 5년간 감면건수의 감소에 따라 감면액 규모도 감소하는 추세이므로,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감면액의 연평균 감소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최근 5년(2018~2022년)간 감면액 연평균 감소율: △8.7%

(3) 추계결과

- 여객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, 취득세는 2025년 111억원, 2029년 77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467억원(연평균 9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0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,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여객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70조제1항)	-111	-102	-93	-85	-77	-467	-93

다.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(안 제70조제3항)

(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(제도개요)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
 - (2018년까지) 100% 감면 → (2020년까지) 85% 감면 → (2021년) 75% 감면
 - 법 제70조제3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,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취득세 면제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%의 감면을 적용²⁾

2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177조의2(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)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(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(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1항부터 제4

- (감면실적) 2021년 감면율 축소 이후 감면건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
감면액은 2018년 213억원에서 2022년 8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임

[표 11]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: 2018~2022년

(단위: 건, 억원)

	2018	2019	2020	2021	2022
감면건수	4,080	3,464	3,230	1,948	1,891
감면액	213	168	149	76	80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

(2) 추계방법

-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5년(2018~2022년)간 연평균 감소율을
적용하여 향후 5년간 세수 효과를 추계
- 최근 5년간 연평균 감면액 감소율: △15.9%
 -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감면율(85%) 적용 시의 2018년 감면액 산출한 후
2018~2020년 감면액은 감면율을 현 수준(75%)으로 조정한 실적을 기준
으로 살펴보면 2018년 160억원에서 2022년 8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

[표 12] 지방세 최소납부세제 적용 시의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: 2018~2020년

(단위: 억원, %)

	2018	2019	2020	2021	2022
감면액	213	168	149	76	80
지방세 최소납부세제 적용 감면액	181	168	149	76	80
조정 감면액 ¹⁾	160	148	131	76	80
감면율	100	85	85	75	75

주 1) 감면액에 75/(연도별감면율)를 곱하여 현행 감면율(50%)로 환산

자료: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세통계연감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결과

-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
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, 취득세는 2025년 48

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)을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가. 취득세: 200만원 이하
나. 재산세: 50만원 이하(「지방세법」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
말한다)

억원, 2029년 24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73억원
(연평균 3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,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70조제3항)	-48	-40	-34	-28	-24	-173	-35

라. 전기·수소전기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(안 제70조제4항)

(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(제도개요)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
 - 동 제도는 2020년 신설
- (감면실적) 감면건수는 2020년 910건에서 2023년 2,521건으로, 감면액은 2020년 109억원에서 2023년 319억원으로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(2020~2023년) 감면건수 및 감면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임

[표 14] 전기·수소전기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실적: 2020~2022년

(단위: 건,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
감면건수	910	1,163	2,000	2,521
감면액	109	141	236	319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지방세통계연감」, 각 연도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정책처 제작성

(2) 추계방법

- 2023년 실적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감면액 증가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
 -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감면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면액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이나,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할 때 최근 4년간 감면액의 연평균 증가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경향이 있어 이를 적용할 경우 향후 5년간 감

면액 규모가 지나치게 크게 추계될 우려가 있음

- 최근 4년(2020~2023년)간 감면액 연평균 증가율: 43.0%
- 2023년의 경우에도 2022년 대비 감면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나, 점차 증가추세가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2022년 대비 2023년 증가율을 적용하여 향후 세수효과를 추계
- 2022년 대비 2023년 감면액 증가율: 35.2%

(3) 추계결과

- 전기·수소전기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, 취득세는 2025년 583억원, 2029년 1,946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5,821억원(연평균 1,16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취득세,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전기·수소전기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70조제4항)	-583	-788	-1,065	-1,439	-1,946	-5,821	-1,164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